

2004. 6. 29 (화)
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정례회
제 4 차 본 회 의

심 사 보 고 서

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사 천 시 의 회
(산업건설위원회)

「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

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정례회
제7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 6. 28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4. 6. 18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6. 19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22호)
- 다. 2004. 6. 28 :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
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건축과장 박경진)

가. 제안이유

2004. 2. 9일자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가.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(안 별표 13 제4호)

- 현 행 : 시설면적 130㎡초과 200㎡이하의 경우에는 1대,
시설면적 200㎡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㎡를 초과하는 130㎡당 1대를 더한 대수
- 개정안 : 시설면적 75㎡초과 150㎡이하의 경우에는 1대,
시설면적 150㎡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150㎡를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

나.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(안 별표 13 제5호)

- 현 행 : 읍·동지역은 세대 당 1대, 면지역은 세대 당 0.7대
- 개정안 : 세대 당 1대(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0.7대)

다. 법적근거 :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2004. 2. 9자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개정조례 안으로
- 조례의 별표 1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
 - 제4호의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「시설면적 130㎡초과 200㎡이하의 경우에는 1대, 시설면적 200㎡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㎡를 초과 하는 130㎡당 1대를 더한 대수」를
「시설면적 **75㎡초과 150㎡이하의 경우에는 1대, 시설면적 150㎡ 초과**의 경우에는 1대에 **150㎡를 초과 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**」로 하고
 - 제5호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「읍·동지역은 세대 당 1대, 면지역은 세대 당 0.7대」를 「세대 당 **1대(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0.7대)**」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과의 관계, 입법절차 및 체계,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.